

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검토보고

행정기획위원회(청소행정과)

의안번호	제158호
제 출 자	성북구청장 (2023. 09. 29.)
의 안 명	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검 토	전문위원 정진만

1. 제안이유

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」 일부 개정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에서 발생하는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그 범위를 조례로 정하여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- 가.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」 제7조제4항 신설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을 조례로 정함(안 제5조제2항)
- 나. 개방화장실 개방시간 범위 추가 (안 제12조제2항)
- 다. 개방화장실의 편의 위생용품 등의 지원사항 추가(안 제13조)
- 라. 공중화장실 관리카드 서식 변경(안전관리 시설 설치 지정 및 설치내역 추가)(안 별지 제1호서식)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 :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
다. 입법예고 기간 : 2023. 7. 13. ~ 2023. 8. 2.(20일간), 의견없음

4. 검토의견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」 제7조제4항¹⁾의 (법률 제18302호, 신설 2021. 7. 30. 시행 2023. 7. 21.) 신설에 따라 공중화장실에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, 개방화장실의 편의 위생용품 등의 지원사항을 추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,

-
- 1) 제7조(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) ① 공중화장실등은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하며,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·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. 다만,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4. 11. 19., 2017. 7. 26.>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등의 경우에는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 대·소변기 수의 1.5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.
- 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에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를 설치하여야 하며,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위환경과 조화되는 화단, 휴식시설, 판매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8조를 준용한다.
- ④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등에 비상벨(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)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,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조례로 정한다. <신설 2021. 7. 20.>
- ⑤ 공중화장실등을 설치·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에 대변기 칸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. <신설 2021. 7. 20.>
- ⑥ 공중화장실등에서 발생하는 오수 및 분뇨는 「하수도법」에 따라 처리한다. <개정 2021. 7. 20.>
-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21. 7. 20.>

○ 우리구는 현재 공중화장실 17곳, 개방화장실 24곳을 운영하고 있으며, 공중화장실은 공무원 공무원 4명이 담당구역을 지정하여 1일 2회 이상 청소 및 시설점검을 하고 있음. (1인당 3~5개소)

○ 공중화장실 관리 예산(세부사업: 공중 및 개방화장실 유지관리)

(단위 : 천원)

구분	2022년 예산액	2023년 예산액	내역
사무관리비	50,628 (구비 39,662 시비 10,966)	61,610 (구비 47,384 시비 14,226)	화장지, 청소용품 등 구입
공공운영비	63,240	67,820	공공요금, 시설유지보수
시설비	90,000	128,480	노후화장실 수리 및 창고설치

○ 개방화장실 지원 내역

- 예산과목: 쾌적한 화장실 유지관리, 공중 및 개방화장실 유지관리, 일반운영비, 공공운영비, 사무관리비

구분	예산액	집행액	잔액	내역
사무관리비	61,610	33,179	28,431	화장지, 청소용품 등 구입 (구비 39,662 시비 14,226)

○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

- 안 제5조제2항의 신설로 공중화장실 등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을 조례로 정하였으며,
- 안 제12조제2항으로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

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.

- 안 제13조로 편의 위생용품 등의 지원에서 안전관리 시설 설치·유지관리비, 그 밖의 비용을 추가하여 실질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함.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」의 일부개정 시행에 따라 구청장이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을 설치·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비상벨 설치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앞으로 주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,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□ 공중화장실 현황

연번	화장실명	지번주소	지역구분	면적 m ²	건축연월일	토지	지목	행정동	비고
				정화조	개축연월일				
1	성북성터	성북동 224-147	주거	23.10 8톤	'86.07.18. '21.12.21리	국유지	임야	성북	북정마을
2	성북2동	성북동 303-19	주거	19.03 3톤	'06.02.16	구유지	임야	성북	성북동골목
3	돈암마을마당	돈암동 51-5	공원	49.18 10톤	'00.08.24 '20.11.03리	시유지	대	돈암1	미아리고개
4	안암동	안암동2가 140-3	공원	29.55 14톤	'86.07.09 '17.06.01내	구유지	공원	안암	놀이터
5	북악숲속	정릉동 산1-214	도로변	75.66 64톤	'01.10.20 '21.12.13리	사유지	임야	정릉3	국민대
6	정릉어울림마당	정릉동 746-4	공원	50.80 18톤	'20.01.07	구유지	임야	정릉3	벤엘교회
7	정릉1호	정릉동 산1-1	도로변	15.17 6톤	'81.07.16 '20.09.26개	국유지	임야	정릉4	정릉초
8	북선	종암동 산2-27	공원	60.36 15톤	'84.08.24 '21.11.30리	사유지	임야	종암	개운산구의회
9	종암마을마당	종암동 108-1	도로변	15.75 6톤	'03.12.27 '20.06.12개	시유지	대	종암	SK아파트
10	월곡1동	하월곡동 96-78	주거	34.78 18톤	'86.07.18 '20.04.27리	국유지	하천	월곡1	장애인
11	화랑로	하월곡동 96-272	도로변	33.12	'86.09.02 '14.10.10개	국유지	하천	월곡1	월곡적환장
12	월곡광장	장위동 산 3-86 (하월곡동 228-3)	도로변	10.80 15톤	'91.06.24 '03.10.29 주공 설치	구유지	도로	장위1	장위중
13	상월곡동	상월곡동 산1-1	공원	23.10 14톤	'86.07.16 '22.10.5.개	시유지	임야	월곡2	월곡초
14	우이천	장위동 157-22	천변	13.52	'14.01.07 '22.12.28 개	국유지	도로	장위3	장위적환장
15	중랑천이동식	석관동 375-3(천)	천변	16.25	'23.03.31	국유지	하천	석관	두산@이동식
16	정릉천	청량리동 207-71(천)	천변	35.20	'14.08.11	국유지	하천		동대문
17	중랑·우이천 합류부	석관동 376(천)	천변	22.32	'21.06.07	국유지	하천	석관	민방위교육장

□ 민간개방화장실 현황

연번	상호(건물명)	소재지	개방시간	개방일	구분	비고
1	삼선동 맥도날드	동소문로 13 (동소문동1가 32-3)	08시~24시	2015.07.01	음식점	성북
2	롯데리아 성신여대점	동소문로 117 (동선동4가 104)	24시간	2015.02.01	음식점	동선
3	성심빌딩	동소문로 203 (돈암동 30-11)	09시~23시	2009.01.01	상가 빌딩	돈암2
4	일신건영휴먼빌 아파트 상가	아리랑로 89 (돈암동 524)	24시간	2017.01.01	상가 빌딩	돈암2
5	우신향병원	안암로 99 (안암동5가 85-9)	06시~18시	2003.04.01	병원	안암
6	안암교회	보문로30가길 41-6 (안암동1가 361-2)	09시~18시	2019.07.01	종교 시설	안암
7	노동사목빌딩	보문로 95 (보문동5가 14)	09시~18시	2009.01.01	종교 시설	보문
8	정릉교회	정릉로 280 (정릉동 139-2)	05시~22시	2017.09.18	종교 시설	정릉1
9	정릉e-편한 세상 상가	북악산로 851 (정릉동 1035-6)	24시간	2019.09.01	상가 빌딩	정릉1
10	정릉빌딩	정릉로 250 (정릉동 465-1)	05시~24시	2009.01.01	상가 빌딩	정릉2
11	부광빌딩 (구 금영빌딩)	보국문로 10 (정릉동 414-10)	24시간	2009.01.01	상가 빌딩	정릉2
12	청수프라자	보국문로 50 (정릉동 401-46)	24시간	2009.01.01	상가 빌딩	정릉4
13	기린빌딩(국민대 길음생활관)	삼양로 22 (길음동 1080)	08시~22시	2009.01.01	상가 빌딩	길음
14	성가복지병원	종암로 191 (하월곡동 88-522)	06시~21시	2003.04.01	병원	종암
15	롯데리아 종암점	종암로 91 (종암동 68-1)	08시~24시	2015.12.01	음식점	종암
16	성북중앙병원	종암로 72 (종암동 10-125)	24시간	2003.04.01	병원	종암
17	제일빌딩	오패산로 49 (하월곡동 70-202)	07시~19시	2009.01.01	상가 빌딩	월곡1
18	정평빌딩	화랑로 103 (하월곡동 17-1)	10시~19시	2009.01.01	상가 빌딩	월곡2
19	장위기사식당	돌곶이로 215 (장위동 216-41)	24시간	2019.10.01	음식점	장위1
20	온누리병원	화랑로 271 (장위동 50-50)	09시~22시	2003.04.01	병원	장위2
21	화랑로 316	화랑로 316	24시간	2020.09.01	상가	석관

연 번	상호(건물명)	소재지	개방시간	개방일	구분	비고
		(석관동 168-34)			빌딩	
22	장위뉴타워	화랑로 248 (석관동 349-1)	24시간	2021.07.01	상가 빌딩	석관
23	현대북악 셀프주유소	정릉로 218	06시-23시40분	2022.10.20	주유소	정릉2
24	보문동3가 179	보문동3가 179 (보문사 앞)	06시-18시	2022.10.31	종교 시설	보문